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4
----------	-----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의자 : 김현택, 김진희, 장근환,
김지훈, 이영환

1. 제안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나. 노인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 마련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국민체육진흥법」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남양주시체육회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u></p> <p><u>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제9조(경비의 지원) ①</u>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u></p> <p><u>2.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u></p> <p><u>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u></p>

제8조 ~ 제13조 (생략)

영 지원

4.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남양주시체육회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남양주시체육회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노인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필요시책 마련 및 지원근거 규정을 목적으로 함

다만,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향후 사업계획수립이 마련되어야 추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 사업계획 미수립 단계로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에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곽 용 환

☑ 「국민체육진흥법」

-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